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03. 31]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5. 신청자격]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합니다.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80호

2. 공급대상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화성시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021.03.31 현재 관련 법령 적용) : 화성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화성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종사자
- ※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12.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총 175개 업종)] 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3.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1.4.12(월) ~4.21(수) (10:00 ~ 18:00)  ※ 인터넷신청은 토·일요일 포함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1. 4. 30(금)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21.5.3(월) ~5.10(월)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18호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담당자 앞 (등기우편은 '21.5.10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21.7.20(화)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 ARS(1661-7700)	'21.8.2(월) 10:00 ~8.4(수) 17:00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a href="https://irts.molit.go.kr">https://irts.molit.go.kr</a>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4.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sup>2</sup> )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20A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172	20.94	11.8054	6.8953	20.9207	60.5614	28,123	2,812	25,311	104,280	(+) 6,000 (-) 24,000	34,123 4,123	74,280 154,280	6~10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22. 6 (예정)
20B (주거 약자용)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16	20.94	11.8054	6.8953	20.9207	60.5614	28,123	2,812	25,311	104,280	(+) 6,000 (-) 24,000	34,123 4,123	74,280 154,280			
28A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84	28.92	15.6116	9.5229	28.8933	82.9478	38,502	3,850	34,652	142,770	(+) 14,000 (-) 33,000	52,502 5,502	72,770 211,520			
28B (주거 약자용)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8	28.92	15.6116	9.5229	28.8933	82.9478	38,502	3,850	34,652	142,770	(+) 14,000 (-) 33,000	52,502 5,502	72,770 211,520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남은 공급물량은 행복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계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란?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0A·B형 주택에는 책상, 책장,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전기쿡탑(2구형)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5.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합니다.

### 5-1.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 ~ 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화성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① 화성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화성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종사자 (**[12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 코드(총 175개 업종)]** 참조)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고일(2021.03.31) 기준 화성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및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1.04.01 ~ 2002.03.31**)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맞벌이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맞벌이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	-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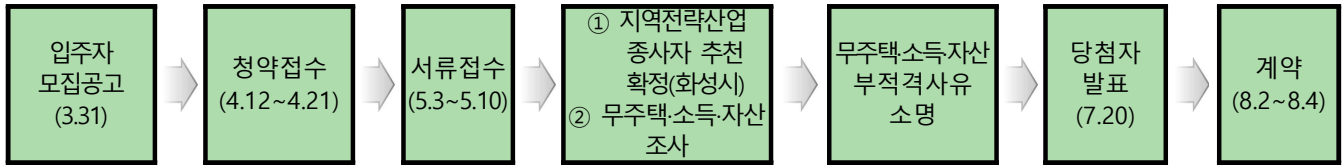
※ '지역전략산업종사자'의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6. 입주자 선정 방식

###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 추천 자격 기준일 : 2021.3.31.

### ■ 입주자 선정기준 : 경쟁 시 추천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합산 → 경쟁 시 추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6. 장애의정도 구분」 참고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5.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범위 참고)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함

###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화성시)

- 화성시에서 청약신청자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기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로 추천 된 경우 아래의 입주자격 검증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해당 여부는 [12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총 175개 업종)] 게시된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화성시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031-5189-7064)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격 검증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7. 청약신청 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및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1. 4. 30(금) 17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8.신청서류] 참고)

### ■ 인터넷(PC) 청약 방법

-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단지선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인터넷(PC) 청약방법 참고
- \* 모바일 앱 사용 시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1. 4. 12(월) 10:00 ~ 접수마감일 '21. 4. 21(수) 18: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인 '21. 4. 21(수)일은 18시까지임을 유의). 청약 마감 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서류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1.4.30(금) 17:00 ~ )**
  -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센터(apply.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 **2021.5.3(월) ~ 5.10(월)**
  - 제출 서류: 공고문(8. 신청서류) 및 LH 청약센터 게시 서류제출안내문 참고하여 제출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05.10(월)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우편 발송(※ 봉투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ex. 홍길동/000000/20A)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18호 임대공급운영1부 지원6-2블록 담당자 앞



**8.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3.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 및 온라인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218호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담당자 앞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입증 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발급처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화성시 소재 지역전략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해당직장
4대보험가입증명원	• 4대보험 가입 증명원(※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재직증명서	• 화성시 소재 직장에서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재직 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해당직장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신청서	• 대상자 : 신청자 본인 ※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기입하여 제출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접속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검색 (분류내용보기_해설서) ⇒ 분류항목명 검색(설명 및 색인어에서 업태, 종목 확인)	1통 (화성시 양식)
회사소개서	• 항목별 내용 기입하여 1~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1통 (화성시 양식)

**■ 기본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공사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 기준 미충족시 계약해지처리 될 수 있음	1통 (공사양식)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해당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사람</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li> <li>• 신청인 <b>본인기준으로 발급</b>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li> </ul>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1통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1통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li> <li>·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li> </ul>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2021.7.20.(화) 17:00 이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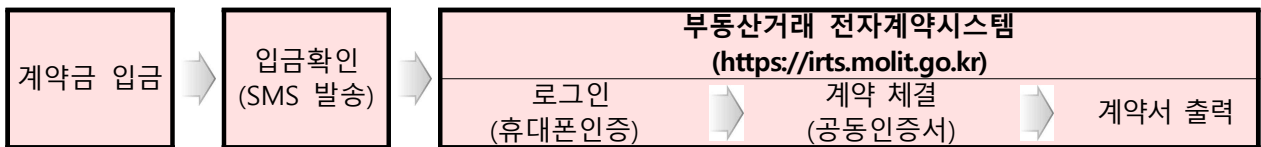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소멸됩니다.

### ■ 계약안내

#### ○ 계약 기간 : 2021. 8. 2(월) ~ 2021. 8. 4(수)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계약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10.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ul> </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li> <li>-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li>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li> </ul>
		자활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자 근로내역</li> </ul>
		공공일자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li> </ul>
	사업 소득	농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li> <li>*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li> <li>*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li> </ul>
		임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ul>
		어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ul>
		기타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재산 소득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ul>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ul>
연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ul>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일반 자산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총 자산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 11.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p><b>■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입니다.</li> </ul>														
예비입주자	<p><b>■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갱신계약 등	<p><b>■ 갱신계약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필요 시 자격확인을 위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해 서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최초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li> </ul> <p><b>■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자는 무주택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p>중복입주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p>신청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b>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b></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p>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li> </ul>
<p>지구 및 단지특성</p>	<p><b>■ 지구여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 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 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탄JC지점내에 폐1위치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를 설치하여 생활여건에 따른 냄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지구 인근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 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외부여건

- 본 건물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본 건물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인큐베이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로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남측 경계선에서 인근 한전 송전선로(신수원~신용인 T/L)의 송전철탑까지 317m 이격되어 있습니다.
- 본 건물 남동측 약 1.8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A(예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 단지내부여건

- 공고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하부 지상1층은 관리사무실, 주민회의실, 경비실, 공용세탁실, 택배보관함 및 우편물 수취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하부 지상6층은 라이프렌탈샵, 청정쉼터, 영화감상실, E-라이브러리, 체력단련실, 자전거 보관소(bike station)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지상17층은 오픈키친 및 햇살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지상7층은 주거약자형 세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행복주택 건물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경계 시설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세대경계벽 제외)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지구 및  
단지특성

-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을 사용한 견고한 고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 2층 주차장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기의 시험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지, 하자 보수 등의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치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행복주택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 출입구 높이는 2.7m이며, 지하 2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행복주택 203대, 인큐베이팅센터 176대, 홍보관 10대, 상가 20대 입니다.
  - 본 건물내 각종 인입(상·하오우수,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인큐베이팅센터는 행복주택 하부 및 북측 건물에 위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행복주택 서측 건물에 위치합니다.
  - 행복주택의 생활자원보관소는 행복주택 지상1층 및 주차장 지하1층 홍보관 옆에 각각 1개씩 위치합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고 세대 쿩탑에는 팬이 설치되는 개별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건물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형태·위치·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S/W가 101동 인근에 설치되어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 TPS실 내, 안테나 : 복도 천장)가 지하1층, 4층 12층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장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옥탑층에는 의장물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태양광 모듈은 사양에 따라 설치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총 4대(17인승 3대, 15인승 1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건물과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본 건물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비디오폰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급속1대(1CH, 53kW), 완속1대(2CH, 7kW), 이동형 충전기콘센트 6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단, 규격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저층세대는 보안등으로 인해 세대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출차 경고등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소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전기 설계 부하용량은 '20㎡형 3,600VA, 28㎡형 3,840VA'입니다.
  - 승강로 및 승강기 기계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쓰레기보관소, 각 시설물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2층에는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3개소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물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수증기의 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업시설 옥상 등에 설치 예정인 태양광 모듈 장치로 인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층까지 운행되는 산업시설용 엘리베이터가 행복주택 남측에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PVC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복도 양 끝에 완강기는 7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건물명칭·동표시·행복주택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뿔칠로 시공됩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합관리반은 현관 신발장 맞은편에 설치 됩니다.
- 세대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삿짐 운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전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등의 임의 위치 이동 등)
- E/V홀, 현관, 발코니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급수급탕 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조명은 모두 LED램프가 적용됩니다.
- 주거약자형 욕실에는 비상연락장치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조립식욕실(UBR)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실내 환기는 폐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하여,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에 배연창시스템이 설계됩니다.
- 에어컨 설치를 위한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에 세대 냉방을 위한 팬코일 유닛이 설치되며, 별도의 실외기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 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17.7월 개교한 치동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은 다원중, 동탄중, 이산중, 청계중, 한백중 등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성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단지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2. 화성시 지역전략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총 175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는 통계작성 목적의 표준분류이며,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기입되는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로서, 국세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업종분류코드를 통해 표준산업분류 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엑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제조업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제조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대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업무내용
정보통신업	61100	공영 우편업
정보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정보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정보통신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정보통신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1210	유선 통신업
정보통신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정보통신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3111	자료 처리업
정보통신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정보통신업	63910	뉴스 제공업
정보통신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1	측량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4	지도 제작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2	제도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13.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 공동주택성능등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화장실 급배수소음	★
4.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5.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다) 환경 관련 등급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 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율	★★
15.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마) 화재 소방 관련 등급

성능등급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미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미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 14.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토목,기계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일엠이씨
		동원건설산업(주), 인본산업(주)	
		전기,통신	
		금성내추럴산업(주), 현대통신(주)	

## 15.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일반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전체세대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수건걸이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일반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설치내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욕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정 세면기	

\* **제공대상 중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공화국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4(수)**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공사로 개별문의 하여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우체국 소인이 '21. 8. 4(수) 이내여야 함)
- \*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16.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인터넷	- LH청약센터 (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 마이홈포털 ( <a href="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a> )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blog.naver.com/happyhouse2u">https://blog.naver.com/happyhouse2u</a> ) - 화성동탄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홍보 모바일홈페이지 ( <a href="http://www.lh-dt2.co.kr">www.lh-dt2.co.kr</a> )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행복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행복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로 인한 피해 또는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